우정사업본부공고 제 2014-74 호

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중 창구업무 취급시간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-60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0월 30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)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및 창구망 합리화를 위해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 내용

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기존과 동일(평일 09:00~16:30)하나, 지방우정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3. 의견 제출

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2014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 등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하는 곳 :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

o 전화 : 02-2195-1376(Fax 02-2195-1379)

o E-mail : two64@koreapost.go.kr

o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종로6(서린동)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

라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)고시 개정안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4- 호

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창구업무취급시간)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·규정할 수 있다.

가. 창구업무취급시간

구분	창구업무 취급시간	비고
1월 ~ 12월	평일 09:00 ~ 16:30	연중 계절 구분 없이 동일함

부 칙<개정 2014. 11. 24>

1.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